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19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운용상황 공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는 현재 설치·운영 중인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에 그 기능을 부여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
- 자치법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변동사항을 시정

다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」, 같은법 시행령, 「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- 입법예고(2006.5.26. ~ 6.15) 결과 : 의견없음

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제안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2006.1.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, 주민의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인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,
- 조례안의 법적 형식과 개별조문의 내용도 개정된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